



서울특별시교육청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 ▷ 일시 : 2012년 7월 19일(목) 8:30~21:00
- ▷ 장소 :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206호
- ▷ 대상 : 학생참여단 · 학생참여위원회 156명

2012 학생참여단·학생참여위원회 연수



서울특별시교육청
(책임교육과)

- ▷ 일시 : 2012년 7월 19일(목) 8:30~21:00
- ▷ 장소 :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206호
- ▷ 대상 : 학생참여단 · 학생참여위원회 156명

2012 학생참여단·학생참여위원회 연수



서울특별시교육청
(책임교육과)

차 례 CONTENTS

I. 연수 일정

II. 교육 자료 5

- 1.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참여 활동 05
- 2. 학생참여단 운영과 역할 19
- 3. 인권친화적인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22
- 4. 나와 너, 우리의 권리 34

참고자료: 학교규칙 제·개정 방향 44

연수 일정

시 간	내 용
09:00~	등록 및 안내
09:20~0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개회사 o 인사말 o 연수 일정 안내
09:30~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몸 풀기 맘 열기: 인사나누기 o 교육 1: 학생인권조례와 학생 참여 활동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교육 2: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어떻게 참여할까?
12:30~13:30	o 점심식사
13:30~1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토론 1: 내가 생각하는 학생참여단은 ?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토론 2: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생활규정
15:30~16:00	o 휴식(간식)
16:00~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토론 3: 학생생활관련 주제토론(교복자율화 등)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교육 3: 성공하는 학교축제 (학교축제기획·운영, 학생회와 동아리와의 관계 등)
18:00~19:00	o 저녁식사
19:00~2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토론 4: 학생참여단 운영 계획과 총회 안건 논의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토론 5: 내가 생각하는 학생참여위원회는 ?
21:00~	o 귀가(사당역으로 이동하여 귀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학생은 동아리, 학생회 및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 소집, 운영, 활동 등 자치적인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
 2. 학교운영, 학교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 ⑤ 학생회는 학생 대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회에서 함께 일할 임원을 선출할 권리
 2. 학생총회, 대의원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할 수 있는 권리
 3. 납부금 징수, 성금 모금,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
 4. 학생회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심사·의결할 수 있는 권리
 5.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학생회 의결 사항을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권리
 6. 다른 학교 학생회나 단체들과 연합하여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활동 내용을 협의할 권리
 7. 학생회를 담당할 교사를 추천할 권리

- ⑥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부당하게 학생 자치활동을 금지·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일시적인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의 사전 통지, 소명기회의 보장,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수렴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19조(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 또는 학생자치조직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의견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학교규칙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④ 학교규칙소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학생자치조직의 요구가 있거나 학교규정의 제·개정안에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내 공청회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⑤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규정 제·개정에 대한 심의절차에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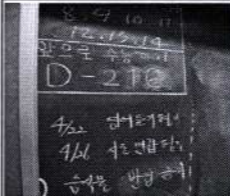



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의 운영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조직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생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⑤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경우 학생의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1 학생자치활동

1. 내가 원하는 우리학교의 모습은 어느 쪽?

여러분이 원하는 학교생활은 어떤 모습인가요?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생활에 대해 다음에 제시한 두 장의 사진을 비교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1.1 폭력적인 	1.2 사이좋은 	2.1 지루한 	2.2 재미있는 
3.1 맛있는 	3.2 맛있는 	4.1 일방적인 	4.2 참여하는 
5.1 교과수업만 	5.2 특기적성도 	6.1 낙후된 	6.2 최신의 
7.1 성적 위주의 	7.2 꿈을 키우는 	8.1 단절된 	8.2 소통하는 

바람직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학생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각뿐 아니라 학생 스스로도 변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주체로서 학교 문화를 만들어갈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간 입시위주의 교육, 성적 지상주의 풍토로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치 않았습니다. 이제는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체험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해야겠지요.

이를 위해 학생자치활동이 제대로 운영되어야 하며, 자치활동의 주체가 바로 '학생회'입니다. '학생회'가 학생들의 대표기구로서 학생들의 간지러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고,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는 등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학생회가 앞장서서 바람직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봐요!

2. 학생자치, 학생회 ~ 그게 뭐죠?

가. 학생 자치활동

학생자치활동은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집단 활동으로서, 민주 시민의 기본 자질과 태도를 함양해 나가는 활동입니다.

- 학생들이 학교생활의 주체로 서는 과정
- 학생자치 활동은 사람을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
-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교육의 장



나. 학생회

학교 안에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학생대표기구로서 학생들이 갖는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자치활동을 펼칩니다.

다. 학생 자치활동과 학생회의 필요성

학생들의 처지와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이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은 학생 당사자입니다. 그러므로 학생 스스로 자치 기구를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3. 학생회는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 학생 의견과 .요구 수렴 기구 : 학급회의, 대의원회의, 온라인게시판 운영 등
- 학생인권 및 .복지 문제 해결 기구 : 학생자치법정, 각종 설문조사, 공청회 등
- 축제 및 학교행사 기획 .추진 기구 : 축제, 소풍, 체육대회, 입학식, 졸업식 등
- 학생문화 선도 기구 : 학생 입장에서 해법 찾기, 캠페인 등

4.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학생회 시작은 이렇게

가. 학생회의 구성



▲ 학생회장 후보자 연설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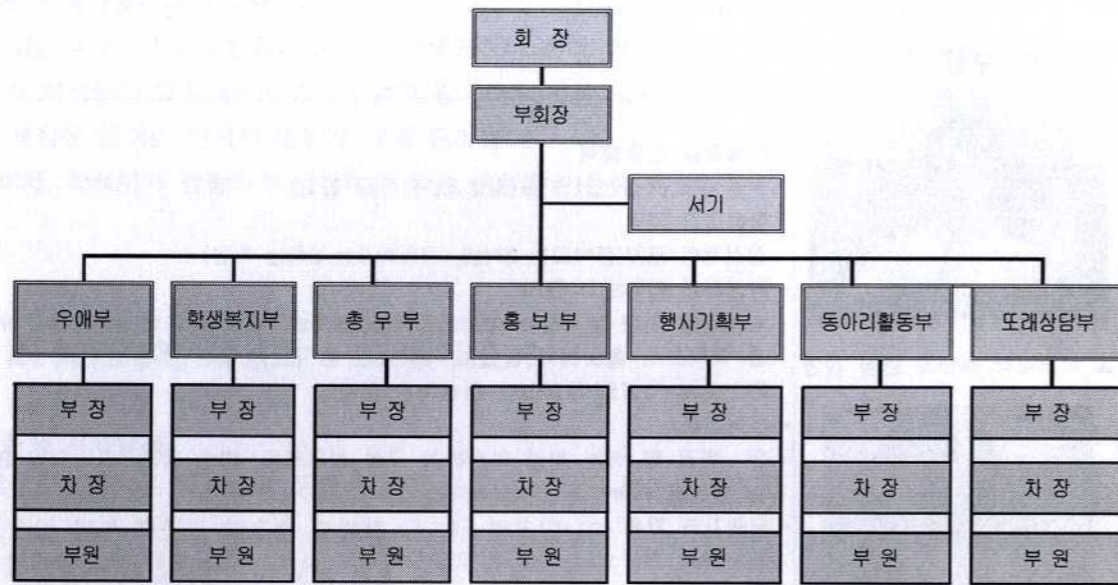
▲ ○○고 학생회장 선출 장면

- 학생회장 선출방식
학생들의 직접선거 방식(임명제, 간선제 금지)
- 학생회장 자격
성적제한 금지(중학교는 3학년, 고등학교는 2학년 적합)
- 학생회장 입후보자 윤리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는 학생회장직을 스펙쌓기나 대학입학 시 가산점 취득을 목적으로 출마하지 않으며, 당선 시 임기기간 동안 충실하게 학생회 임원으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마음가짐 필요
- 선거운동
등·하교 및 쉬는 시간 이용하여 교실 선거운동, 방송 유세, 포스터나 명함 등 홍보물 제작·배포, 각종 이벤트
- 유권자의 자세
친분이나 외모보다는 공약, 회장으로서의 자질, 책임감등을 보고 소중한 한 표 행사
'누가 되든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는 무관심, 귀차니즘이 아닌 자신을 대변할 대표를 내 손으로 뽑는다는 자세로 무효표 보다는 소중한 한 표 행사
- 학생회 부서 구성
학급회장단(대의원회)으로 구성되며, 부서는 학생회장의 지목으로 구성 및 인준할 수 있음



◀ 최근 초등학교 선거부터 열기가 뜨겁다. 자치활동이 활성화 되었다기보다는 입시와 스펙쌓기의 연장 때문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민주주의 체험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초등학교부터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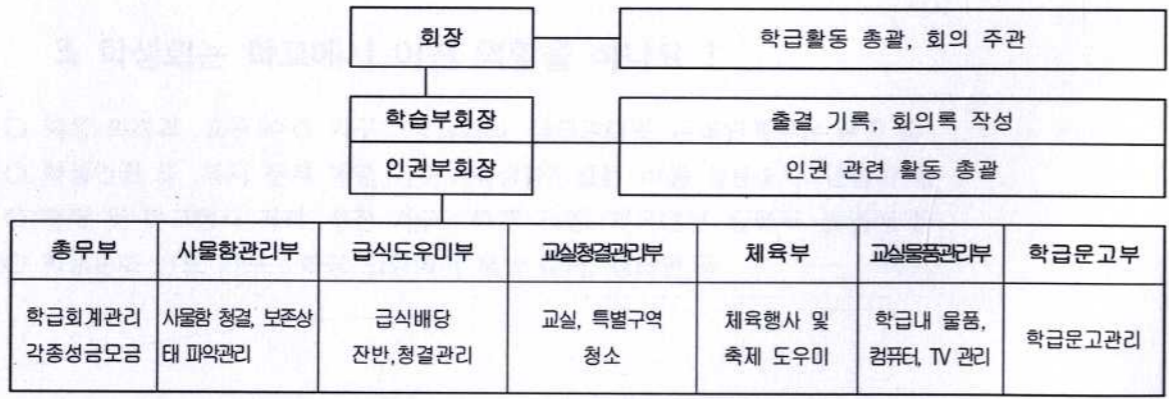
나. 학생회의 조직표 (예시)



- 학생회장 : 총괄
- 부 회장 : 학생회실 총관리 (환경미화, 게시판, 회의 사회 등)
- 서 기 : 회의록 작성, 게시물 관리 및 담당, On-line 자치법정 운영
- 우애부장 : 실내 안전 및 매점 질서활동, 폭력 예방 활동
- 학생복지부 : 화장실 휴지 및 비누, 정수기 및 물컵, 급식모니터링 등 학생복지활동
- 총무부 : 학생회실 물품 및 기기 관리 및 회계 처리 및 실무 담당
- 홍보부 : 학생회 소식 및 학생참여 행사 on/off(게시판 등) 홍보 담당
- 행사기획부 : 축제, 체육대회 등 학생회 참여 학교 행사를 사전 기획, 추진 담당
- 동아리활동부장 : 풍물반, B-boy, 댄스반 등 학내 동아리연계활동
- 또래상담부장 : 또래 멘토 활동, 마니또, 자매반 결연 활동

다. 학급회 구성 및 조직표(예시)

학급 정·부회장 선거는 학생들이 책임 있는 민주시민의 자세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학기 초 민주적인 학급회 구성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체험해요!



○ 학급회장 선거 절차(예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 공고하기 → 후보자 등록하기 → 후보자 공약과 홍보 활동 → 선거와 투·개표 → 당선자 소감 발표와 당선자 공고 → 평가와 마무리

- 선거 10일~1주일 전쯤 선거 업무를 관장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규모 : 3~5명 정도
- 선거관리위원회 역할 : 선거 업무 전반(선거 공고, 투표지 작성과 배분, 개표, 집계 등)
- 투표용지 예시

기호 1 홍길동	기호 2 황진이	기호3 일지매
선거관리위원회 (인)		

5. 개념 있는 학생참여위원회 활동을 위한 마인드

가. 우리 학교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자!

나를 믿고 뽑아준 학생들이 진정으로 고맙지 않나요? 뽀뽀하고 답답한 학교생활에 지친 선.후배 친구들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학생회 리더로서 가져야 할 가장 첫 번째 마인드입니다.

나. 맡은 역할에 충실하고 책임감 있는 리더가 되자!

"선거하면 뭐해 그 나물에 그 밥, 어차피 당선되면 끝인 걸!"
"가산점 받고 대학 잘 가려고 학생회 하는 것 같아."
선거 때만 반짝, 막상 당선 되서는 공약도 안 지키고 학생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학생회 때문에 생겨난 말들입니다.
임기 기간엔 최선을 다해 공약도 실천하고 열심히 발로 뛰는 리더가 됩시다.

다. 함께 일하는 학생회 임원들끼리 소통하고 배려하자!

학생회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공동체 정신'일 것입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값지다는 말을 꼭 기억합시다.
학생회장이나 선배들은 독단적으로 학생회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후배들은 불만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뒤에서 홍보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해 봐요!

라. 귀차니즘 극복! 자발적, 적극적인 자세를 갖자!

처음에 열심히 하려는 마음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몸은 천근만근~. 임명장을 받았을 때 다짐했

던 첫 마음을 떠올리며 귀차니즘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참가해요!

누군가의 눈총, 잔소리, 다투에 마지못해 활동하는 임원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리더가 됩시다!

마. 하던 대로 반복하는 방식은 NO! 참신하고 특특 튀는 새로운 방식에 도전하자!

작년에 하던 대로 똑같이 반복하는 축제, 학교행사, 학생회 운영은 이제 그만! 학생들의 눈과 귀를 집중시킬 참신하고 특특 튀는 아이디어를 많이 냅시다.

요즘 유행하는 코드, 학생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문화아이콘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학생회 활동이 늘 새롭고 신선하도록 기획, 운영해 봐요.

●이런 활동은 어때요?

당산초 5학년 2반 자전거 금지에 대한 마련 서울시장 도로건설 약속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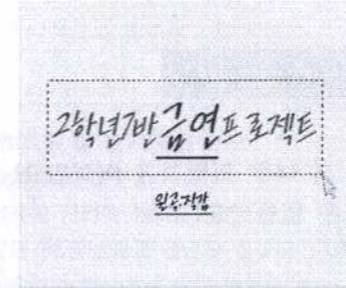
당산초교 5학년 2반 자전거 동아리가 16일 배성호 담임선생님(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함께 내년에 자전거도로가 될 길을 답사하고 있다. 취재중 기자 sajinman@donga.com

“보관소도 없고 사고도 걱정되니 타지 말라.” vs “보관소와 전용도로를 만들면 되죠?” 서울 당산초교 5학년 2반 어린이들이 ‘일’을 냈다. 학교에서 자전거를 타지 말라고 하자 아예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버린 것. 서울시청은 학교 앞 선유도 보행육교~양평동 롯데제과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고 며칠 전 서울시장 영의의 공문을 학교로 보내 왔다.

5학년 2반과 서울시장, 자전거도로의 ‘삼각항수’? 한강을 끼고 있는 당산초교에는 집이 먼 어린이가 많아 한 반의 절반가량이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 학교에 자전거 보관소가 없어 남의 집 대문 앞에 ‘불법 주차’를 해 민원도 많았다. 결국 학교는 ‘자전거 등하교 금지’ 방송을 내보냈다.

그렇다면 아이들 생각은? 배성호 담임선생님은 이 문제를 놓고 국어 시간에 ‘모의 법정’을 열었다. 학생들은 ‘학교 방침에 따르자’고 했다. 하지만 박주완 장세현 군은 “건강과 통학 시간 등을 따져 보면 자전거를 타는 게 낫다. 타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친구들도 수긍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자전거 보관소와 전용도로. 배 선생님은 배네수엘라 어린이들이 안전한 ‘산호세 놀이터’를 만든 실화를 다룬 책 ‘놀이터를 갖고 싶어요’를 소개했고, 박 군과 친구들은 이 책에서 힌트를 얻어 7월 서울시장에게 편지를 보냈다. 9월에는 9명으로 구성된 ‘5학년 2반 자전거도로 만들기 동아리 모임’을 만들었다. 동아리는 자전거 환경운동 단체와 학교 앞 도로를 답사하고 어떻게 도로를 만들면 좋을지 대안을 연구했다. 이런 내용을 담아 지난 달 두 번째 편지를 보냈고, 시청과 구청 담당자와 협의도 했다. 그리고 드디어... “내년에 도로가 만들어지면 친구들과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맘껏 달리고 싶어요.”(박 군) <배수강 기자>bsk@donga.com © 동아일보 &donga.com,

○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반가를 함께 만들어봐요!(예시- 영림중)
학생들이 모두 알고 있는 노래를 정하고 함께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사를 바꾸어 함께 불러서 UCC로 만듭니다.



(챔피언)6반(챔피언)친구와 사이좋은 6반

노래 선택 : 반 전체
개사 : 반 전체
촬영 : 회장 김00
편집 : 부회장
직감' 개사

노래 선택 : 반 전체
개사 : 반 전체
촬영 : 회장 김00
편집 : 부회장
'챔피언' 개사

금연송

니가 담배필거란 직감이와(Don't 흡연)
자꾸만 이런저런 핑계들만(Don't 흡연)
느낌이 달랐던 불쾌한 냄새(Don't 흡연)
난 참을 수 없어(건강을 위해-)
담배 안 편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와서 Why do 흡연
이대로 넌들 수 없어 Never(건강을 위해-)
OH~이유 아닌 이유로 OH~ 제발 담배 피려 하지마
(Pleas no no no no) 담배 피려하지 마
한번만이라도 다시 생각해볼래~
(Pleas no no no no) 간접흡연은 싫어
우리 모두를 위해 담배 끊어봐~
흡연은 안 좋아 담배 끊어봐
우리 건강들이 점점 나빠져 가잖아
흡연은 안 좋아 건강생각해
우리 건강한 내일을 위해~

진정 6반을 아는 여러분이 챔피언입니다. 하!

1학년 6반 편가르지 않는 것이 숙제
자꾸 떠드는 사람 오늘 청소 다같이 걸레 들고
교실 한바퀴 교실 한바퀴 열정이 터져
우리반에 퍼져 복도 타고 옆 반에도 퍼져
커져 아름다운 6반이여 뭉쳐져 가는 우리 우정
둥글게 둥글게 돌고 도는 학교 생활
1학년 한 번인데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공부도 하면서 놀때는 놀면서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앞으로 나가자
(챔피언)숙제 잘하는 6반 (챔피언) 공부에 미치는 6반
(챔피언)청소 즐기는 6반 (챔피언) 6반
(챔피언) 6반 (챔피언) 친구와 사이좋은 6반
(챔피언) 운동도 잘하는 6반 (챔피언)
(챔피언) 1학년 6반이 챔피언~~~

2 학생 자치활동, 이런 것이 궁금해요.

1. 학생회 운영,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학생회 운영 업그레이드 편

Q1. 학생회 임원이 되었지만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너무 막막하고 어려워요! 짧은 시간에 학생회 업무를 파악하고 일을 추진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1. 좋은 방법으로 임·원·수·련·회를 추천합니다. 학생회에 대해 배우고 토론하며 학생회 임원간의 협동심을 키우는 워크숍으로 학교 사정에 따라 하루나 1박2일, 2박3일 일정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 임원수련회 추천 프로그램
 - 어색함을 깨고 친해지기 (공동체 놀이, 대동놀이, 캠프파이어)
 - 학생회, 리더십 강의, 교육
 - 연간 활동 계획 수립을 위한 모둠 토론·발표
 - 가슴을 열어라! 교사-학생 소통 코너
 - 학생회장단 포부와 다짐의 시간
- 임원수련회 장소
 - 학교, 각종 수련원, MT시설, 도심 속 연수시설
- 임원수련회 에티켓
 - 우리 학교를 대표하는 리더로서 임원수련회에 참여하는 만큼 술, 카드, 화투는 삼가구요!
 - 불참하거나 빠는 자세 NO! 적극 참여해요!

Q2. 수백 명이나 되는 전교생의 의견을 어떻게 모으죠? 일일이 다 만나다 임기가 끝날 것 같습니다. 학생의견을 수렴하거나 학생회의 추진사항을 전달하기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A2.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학생들을 떠나 활동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학생회'입니다. 학생회는 늘 학생들 속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묻고 참여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회의'입니다.

학급회의와 대의원회의 개최



▲ ○○여고 '대의원회 표시기'

- 이런 회의 분위기는 바뀌세요!
 - 자율학습으로 대체하는 '학급회의' NO!
 - 아무런 준비 없이 간식 먹으러 오는 '대의원회의' NO!
 - 학원 간다고 빠지는 학생회회의 NO!
- 회의 및 실행 절차
 - 학생회 집행부 1차 회의 안건 설정
 - 학급회의(HR) 진행

대의원회의의 안건, 시간, 장소를 공지하는 용도로 각 반의 게시판에 붙여 놓아 대의원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 대의원회의의 진행
- 학생회담당교사, 부서에 전달
- 학생회 집행부 2차 회의로 모아진 의견을 실현할 추진 계획 수립 및 실행
- 평가 및 결과 보고(학급, 대의원회의)
-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

▶ 학급회의를 잘 하기 위한 방안

1. 회의를 위한 훈련을 한다.
2. 건의사항 처리에 성의를 보인다.
3. 안건은 학급 생활과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으로 선정한다.
4. 학급회의와 학생회 활동을 연계한다.



▶ 학급회의의 장애 극복을 위한 6계명

- 1계명 - 매끄러운 학급회의의 진행에 강박관념을 갖지 마라.
- 2계명 - 사회자를 훈련시켜라.
- 3계명 - 회의 시간일 때는 회의를 하라.
- 4계명 - 학급회의의 정형을 고집하지 마라.
- 5계명 - 회의 용어를 쉽게 만들어 적용하라.
- 6계명 - 회의 결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라.

- ○○고등학교 학생회임원수련회 자료집 중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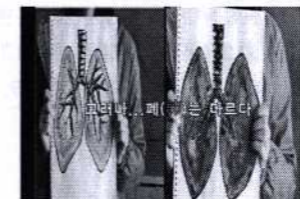
2.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학생회 종결자, 이렇게 하면 쉽다!

Q1. 뉴스에서 보도했던 학교폭력, 왕따, 뺑서들 등의 문제가 우리 학교에도 존재해요! 간혹 이런 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을 위해 학생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A1. 학생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더불어 '학교'라는 공동체 생활에서는 꼭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학교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자나 흡연하는 학생들을 무조건 처벌하고 범죄자 취급할 수도 없지요. 어떻게 하면 일부 일그러진 학생문화를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학생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왕따, 뺑서를 학교폭력 NO!
학생 의식·문화 개선 캠페인



- 학생회 주관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만들기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홍보캠페인

◀ ○○중 금연 캠페인 동영상 화면

◀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활동 (서울 가산중)

- 학교폭력, 왕따, 뺑서들의 피해 관련 시청각 자료 시청 및 소감나누기
- 피해학생, 가해학생 입장에서 해결방안 모색 및 학생회 실천 활동 토의
- 학생회 주최 CF패러디, 공익광고 동영상 상영, 스티커 설문, 홍보 부스 운영

▲ 양동중 학생인권조례 홍보 캠페인

Q2. 학생회가 학생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이색적이고 의미 있는 이벤트나 행사는 없을까요?

A2. 스승의 날, 아버지의 날이 있듯이 학생들을 위한 날 '학생독립운동기념일'도 있습니다. 학생회 주관으로 학생독립운동기념일 기념행사를 추천해 드립니다. 또, 일상적으로 학생들에게 학생회의 활동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학생회장들이 주기적으로 아침을 여는 방송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거 때 향응을 보장하는 선거운동을 하지 않도록 캠페인을 하기도 합니다.

11.3 학생독립운동기념일 기념 교내행사

◀ ○○여고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맞이 버튼 배포

◀ ○○고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기념식 학생회 촛극장면

◀ 학생회장이 직접하는 아침 방송

-회의나 건의함에 있었던 학생들의 의견을 공개하고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나눕니다.

- 학생독립운동기념일 유래
1929.11.3.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독립운동 당시 학생들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정신을 계승하고자 국가기념일로 제정
- 학생독립운동기념일 기념활동 사례
-11.3 학생독립운동기념일 교내 기념식 (유래 및 정신 알리기, 퍼포먼스, 유인물 제작 배포 등)
- 기념 버튼 제작 배포 운동
- 아침방송
- 학생독립운동기념일 맞이 '학생들이 바라는 학교' 스티커 설문조사 이벤트
클린(Clean) 임원선거 캠페인
-회장이나 부회장을 하면 햄버거나 피자를 쓰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후보들이 스스로 서약하고 지키는 활동

Q3. 학사일정 속에 들어있는 의례적인 행사 외에 새로운 활동은 없을까요? 식상한 내용 말고 신선한 내용으로 활동을 시도한 사례가 있다면 알려 주세요!

A3. 그간 학생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어서, 새롭고 특색 있는 활동이 많지는 않습니다. 참고할 만한 실제 활동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합니다.

◀ 가산중 교복 물려주기: 학생회가 학생들의 교복을 치수별로 정리하여 학생들에게 1000원에 보급

◀ 음악카페 운영

○○고 학생들이 끼와 감성을 발휘 위한 카페를 3층에 설치 운영함으로써 생활 속에 살아 숨쉬는 문화 공간을 조성함 (1주일에 2회 공연)

◀ 지역사회봉사하기

○○고 학생회는 연말, 추운 날씨에도 우리 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분(동사무소, 경찰서, 소방서, 파출소, 환경미화원 등)을 찾아뵙고 차 대접을 하며 고마움을 되새김



교육 자료

- 학생참여단의 역할과 운영



1. 학생참여단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수립에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설치된 조례상의 공식기구입니다. 학생참여단은 교육감에게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교육감 또는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회의에 출석하여 질의에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인권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학생참여단의 역할 】

- ▶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
- ▶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 계획에 대한 자문 및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 ▶ 학생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어 특별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 결과의 심의 및 구제 조치 권고
- ▶ 교육감의 교육정책 및 입법 활동에 대한 학생인권영향평가 및 개선 권고
- ▶ 학생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입법, 정책, 교육활동 및 기타 사회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
- ▶ 학생인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을 위한 토론회 등의 공론화 활동
- ▶ 학생인권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 등 연구·조사 보고서의 발간
- ▶ 이 조례에서 정한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자문
- ▶ 학생인권지원센터의 활동에 관한 평가
- ▶ 그 밖에 교육감, 학생인권옹호관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

2. 학생참여단의 임기와 활동은 어떻게 하나요?

학생참여단의 임기는 1년입니다. 발단식을 시작으로 2012년 5월 17일부터 2013년 5월 17일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회의는 정기회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수시로 소집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학생참여단은 대표 1인, 부대표 3인을 비롯하여 집행부를 구성하여 운영됩니다. 학생참여단 운영에 대해서는 학생참여단 회의에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 학생참여단의 운영 】

- ▶ 학생참여단은 지역 교육청별 학생 수를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 ▶ 학생참여단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 학생참여단은 대표 1명과 부대표 3명을 포함한 대표단을 구성하고, 집행부서를 둘 수 있다. 참여단의 대표 및 부대표는 참여단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 학생참여단은 연2회 정기회를 가지며,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2012년 학생참여단은 어떻게 구성되었나요?

2012년 학생참여단은 지난 1월 26일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라 학생참여단 구성 계획을 수립하고, 5월 1일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천과 교육감 위촉을 통해 모두 10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3

인권친화적인 학교생활규정 제 · 개정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 교사, 관리자, 교육청 등이 지켜야 할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나이가 어리거나 학생이라는 이유로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학생들이 누려야 할 인권의 내용을 공포한 것입니다.

인권친화적인 학교생활규정 제 · 개정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 교사, 관리자, 교육청 등이 지켜야 할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나이가 어리거나 학생이라는 이유로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학생들이 누려야 할 인권의 내용을 공포한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로가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약속 "학생인권조례"

제 1조~제3조 / 인권은 정말 중요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생들의 인권 보장!

제4조 /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해

- 어른들도! 학생들도!

제5조 / 차별은 안돼! -학생들은 피부색이 어떻든, 여자든, 남자든, 어떤 종교를 믿든, 몸이 불편하든 아니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어디에 살든, 남자를 좋아하든 여자를 좋아하든, 생각이 같은 다르든, 아팠거나 별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든, 없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 어떤 이유에서든 차별 No!

제6조 / 모든 폭력은 이제 그만 !

- 뺨기, 때리기, 놀리기, 괴롭힘 ,따돌림, 욕설, , 기합주기, 체벌 등 날 무시하는 모든 것 OUT!

제7조/ 학교는 안전해야해!- 다칠 걱정없이 마음껏 뛰놀며 공부할 수 있도록!

제8조 /제9조 공부는 즐겁게!-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과 필요한 것들을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억지로 남아서 하는 공부는 No!

제10조 제11조 /충분히 쉬고 문화를 누리는 것도 권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충분히 쉬고 다양한 문화를 느낄 수 있어야 해요.

제12조 / 학생들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머리 모양이나 옷 차림으로 개성을 무시해선 안돼요! 단, 교복은 학생이 참여한 교칙으로 약속할 수 있어요.

제13조 ~제15조 / 나만의 비밀은 보호 받아야 해! - 동의 없이 일기,가방 검사No!
 핸드폰 같은 전자 기기도 함께 사용규칙을 만들어가요!

제16조~제17조 / 어떤 생각을 할지는 나의 자유!- 학생들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글로
 쓰고 함께 모일 수 있어요. (신문, 인터넷, 집회, 서명운동 등)

제18조~제20조 참여 할 수 있어야 해요!
 - 학교 교칙, 교육정책 만들 때도 학생참여! 교육의 주인으로 성장하기 !

제21조~제24조 건강하게 살 수 있어야해!
 - 깨끗한 교실과 화장실, 운동장 ,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실! 맛있는 급식!

제25조 징계를 받을 때도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 징계를 받을 때, 억울하지 않도록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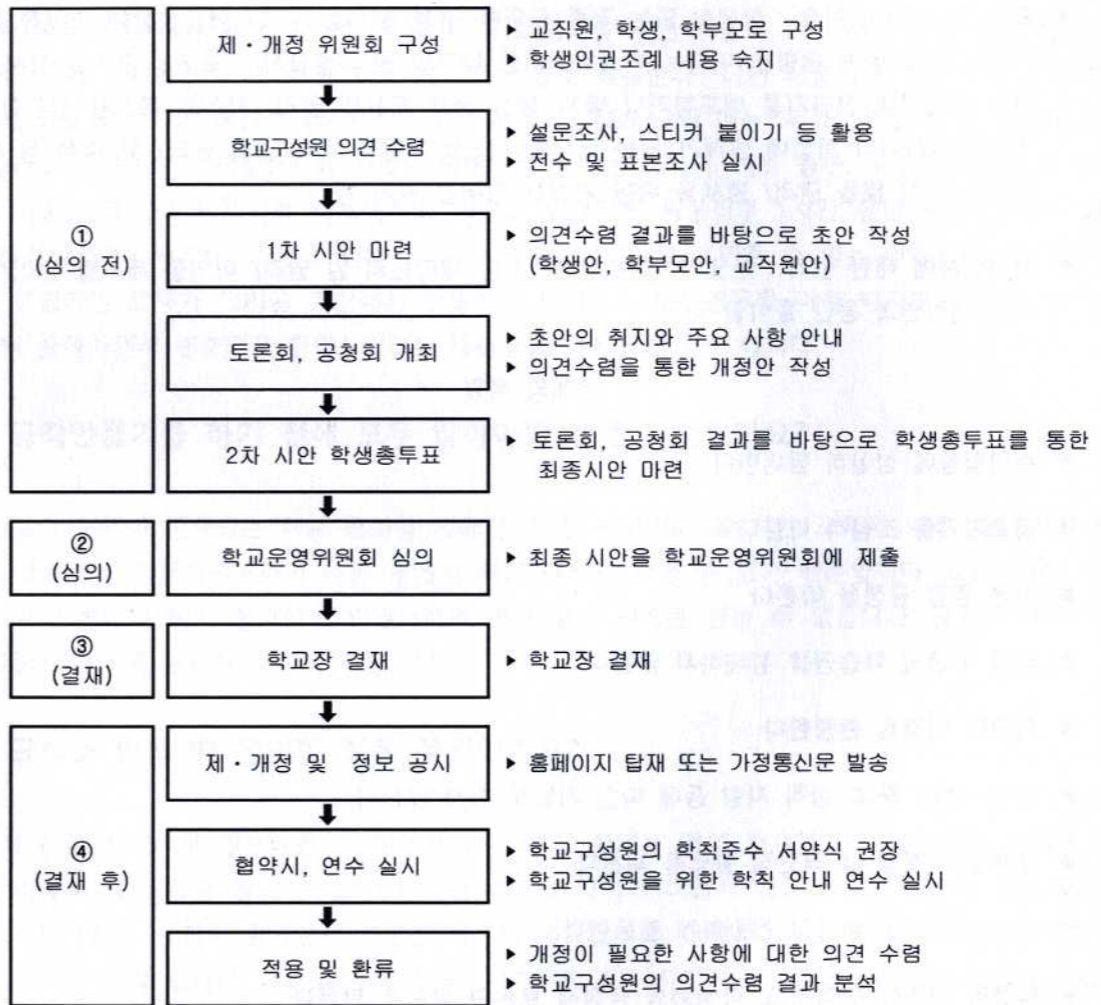
제26조~제27조 권리는 함께 지켜야해!
 - 다른 사람의 인권도 함께 지켜요! 도움이 필요할 때 학생인권옹호관에게 ! 비밀 보장!

제 28조 더 많은 차별을 당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권리를 보장해야해!
 - 지금 차별받고 있는 약한 친구들에게 더 많은 배려를 해야해요!

제29조~제31조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도 우리의 권리!
 - 어른들도, 학생들도 인권에 대해 배우고 알아야해요!

1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하는 학교생활 규정 만들기 절차

규정만들기를 진행하기 전에 우선 생활규정을 만드는 목적에 대해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생활규정을 만드는 목적은 학교 구성원 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목적을 공유하고 권리와 의무가 균형 잡힌 생활규정을 만들 수 있다면 좋겠지요?



뉴욕교육청 학교규정 가이드라인

학생의 권리

- **무료 공립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 : 차별, 괴롭힘, 편견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를 받을 권리/ 개인 기록에 대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등
- **표현 및 개인의 자유** : 학생회 또는 각종 모임을 구성, 참여할 권리/ 학교생활에 의견을 표명할 권리/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위원회를 대표할 권리(필요시 투표권도 행사)/ 정치적인 것을 포함하여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배지, 완장 등을 착용할 권리/ 자신의 복장을 결정할 권리(위험하거나 학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를 제외)/ 체벌을 받지 않을 권리/ 몸 수색 등 부당한 검색을 받지 않을 권리/ 맹세를 위한 기립을 거부할 권리 등
- **적법절차에 대한 권리** : 무엇에 대한 징계조치를 내리는지 알 권리/ 이의를 제기할 권리/ 성인 또는 대리인과 동반 출석할 권리

학생의 책임

- 수업활동에 성실히 참여한다
- 학교기기를 조심히 다룬다
- 건물 출입 규정을 따른다
-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타인의 인격을 존중한다
- 인종, 성별, 종교,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 분쟁을 해결할 때 극단적 방법을 피한다
- 서로에게 예의 바르고 진솔하게 행동한다
- **학생회 선거에 참여하고, 학생회를 긍정적 토론의 장으로 만든다**
- 안전하고 학습에 방해되지 않는 소지품만 학교에 가져온다
- 학교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

2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하는 학교생활 규정을 만들기 전에

● 규칙은 왜 필요할까요?

규칙이 필요한 이유는 **모두가 자유롭고 존중받으면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즉 서로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규칙을 만드는 것이지요. 학급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다보면 서로가 지켜야 할 매너가 있습니다. 매너를 지키지 않아서 불편한 상황들을 생각해보고, 그런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규칙을 만드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갈등이 있을 때 서로 폭력을 쓰면 싸움이 되어 서로 다칠 수 있지요? 그런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갈등이 생겼을 때는 말로 해결한다.' 이런 내용의 규칙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로 해결하기 어렵고 감정이 막 생길 때가 있지요? 그럴 때는 '누가,' '어떻게' 그 상황에서 폭력을 말리고 평화적으로 해결할지를 서로의 약속으로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싸움이 일어났을 경우 모두가 싸움을 말리고 중재자로 나서야하고 싸움의 당사자는 싸움직후 1시간 동안 서로 떨어져 있다. 그 후 상담선생님께 가서 상담을 받는다.' 이런 것을 반 규칙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또, 청소를 안 하고 도망가면 모두가 더러운 교실에서 생활하게 되지요? 그런 경우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반 청소는 하루씩 돌아가면서 변호대로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 규칙만들기를 하기 전에 모두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서로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규칙만들기를 하는 모두가 학생인권조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속에서 학교 규칙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가 서로 토론해서 합의 한다면 인권조례와 맞지 않는 규칙은 만들 수 없습니다. 규칙은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규칙을 만들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규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뭔지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규칙을 안 지키는 이유는 그 규칙이 필요하다고 동의하지 않거나 지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동체에서 규칙을 정할 때 그 규칙이 필요한지 충분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그 약속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약속한 것은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생활규정을 제.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학생들이 학교 교칙을 담당하게 여기는 이유는 양이 너무 많고 세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으로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알기도 쉽고, 지키지 않았을 때 확인하기도 쉬우니까요. 따라서, 기본적인 매너로 함께 지키도록 되새길 것과 규칙으로 만들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 친구나 선생님을 만나면 꼭 인사를 한다.'를 규칙으로 만든다면 선생님이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모든 반 친구들의 인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서로를 난처하게 만들 수 있겠지요.

즉 서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여 어떤 사람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규칙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설 때 서로 앞에 서려고 하다가 부딪치거나 넘어진다든지, 맛있는 반찬을 앞에 선 사람이 주로 많이 가져가게 된다든지 하는 불평등한 상황을 고치기 위해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맛있는 반찬이 충분히 공급되거나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이미 만들어져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규칙이 필요 없겠지요? 즉 규칙이 없어도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여건을 만들도록 충분히 노력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서로의 약속을 정하는 것이 바로 규칙입니다. 따라서, 지켜야 할 의무와 함께 권리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생활협약 제·개정 시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좋은 방법은 없나요?

학생과 밀접한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규정제개정위원회 구성할 때 학생 비율이 50%가 넘도록 합니다.

● 제재 수단 (벌칙 등) 을 만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규칙을 꼭 지키도록 하기 위해 벌칙을 정할 때는 상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에 대한 규칙을 정할 때 '청소를 더럽게 하면 다시 한다.'고 하면 '더럽다'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칙을 받는 학생이 다른 사람도 더럽게 했는데 나만 벌칙을 받는다고 억울해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를 깨끗이 한다.'는 서로간의 약속으로 하고, 벌칙을 만들 경우에는 '쓰레기가 남아있고, 걸레질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하루 더 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규칙이나 벌칙의 내용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학급이 너무 시끄럽다고 해서 '한 사람이 하루에 10마디씩만 할 수 있다'고 하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칙이라고 해도 이미 금지된 체벌을 벌칙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체벌은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폭력으로 이미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예외없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규칙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규칙이나 벌칙으로 개인의 인권이 침해된다면 그 규칙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규칙으로서의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 규칙을 고쳐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규칙은 학급친구들의 동의를 얻어 만드는 것이기에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만들 때는 생각지 못한 상황들이 실제 시행하나가는 과정에서 벌어져서 규칙을 고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갈등이 생겼을 때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만들었는데 신체적 폭력은 안하는데 심한 욕을 하는 상황이 생겨서 학생들끼리 더 많은 상처를 입는다면 이럴 때, 공동체의 의견을 물어 욕에 대한 규칙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너무 자주 바뀌면 혼란을 주므로 구성원이 고치는 데 대다수 동의할 때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규칙을 만들 때는 규칙의 내용 뿐 아니라 바꿀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0반 학급규칙은 한 학기에 한번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의 개정 동의를 있을 경우 개정에 대해 회의를 연다.'

는 내용의 규칙이 있으면 규칙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의견을 내서 30명의 학생 중 10명 이상의 동의를 하면 회의를 통해 규칙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생들이 관심이 없는 것은 '말해봤자 소용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학생회가 학생들에게 학생 주도로 만드는 것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스스로가 의견을 모으면 변할 수 있다면 생각을 학생회 뿐 아니라 각 학급회장, 부회장들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급회의를 하기 전에 학생회 이름으로 '폭력도 체벌도 별점도 없는 학교만들기'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호응을 얻을 만한 제안서를 만들고 대의원들에게 먼저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의원들에게 의견수렴을 할 때도 컴퓨터로 직접 치면서 빔 프로젝트로 큰 화면을 띄워놓고 공유하는 의견에 대해 바로바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차로 의견수렴을 한 후 대의원회에서 초안을 만든 후에 전체 토론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시>

학생자치활동활성화 체크리스트

- 1) 학생회실(동아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 2) 학생회실(동아리실)에 컴퓨터 등 기본 사무용품이 갖추어져있나요? 예 아니오
- 3) 학생회 전용 게시판이 (온라인, 오프라인) 있고, 활성화되어있나요? 예 아니오
- 4) 학생회 예산·결산을 학생회를 통해 심의·의결하나요? 예 아니오
- 5) 학생회 자체로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나요? 예 아니오
- 6) 학생회, 학급회 선거 때 직접, 비밀, 보통, 평등 선거가 이루어지나요? 예 아니오
- 7) 학생회, 학급회 선거를 할 때 입후보 이후 선거 까지 입후보활동과 선거 활동에 충분한 시간을 보장받나요? 예 아니오
- 8) 생활규정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 9) 학생생활규정 제, 개정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도록 안내 받았나요?
예 아니오
- 10) 학생생활규정 제, 개정시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쳤나요?
예 아니오
- 11) 학급회의나 대의원회의는 정례화 되어있나요? 예 아니오
- 12) 건의사항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나요? 예 아니오
- 13) 학생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논의시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
나요? 예 아니오
- 14) 적과 징계 기록에 관계없이 학생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예 아니오
- 15) 학생회 예산을 미리 안내받고 필요할 때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예 아니오
- 16)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 인터넷 활동, 신문간행 등의 언론활동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나요? 예 아니오

예시자료1: 자율규정과 타율규정을 함께 만드는 00중학교 사례

하나, 규칙정하기 1차 토론을 합니다.

<규칙 정하기 1차 토론회 예시>

● 함께 약속해요~ 학급회의 ^^

학년 반

1. 수업 규칙과 생활 규칙을 만들어봅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우리 반, 우리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의 권리(인권)를 존중하고 자기 행동에 책임지는 사람이 되도록 합니다.

2. 수업 규칙에는 학생과 교사 모두가 지켜야 할 것들을 생각하여 적어봅니다.

학생이 지켜야 할 규칙	선생님이 지켜야 할 규칙

※ 이유 :

3. 생활 규칙에도 학생과 교사 모두가 지켜야 할 것들을 생각하여 적어봅니다.

학생이 지켜야 할 규칙	선생님이 지켜야 할 규칙

※ 이유 :

두을, 1차 토론회를 바탕으로 2차 규칙정하기 토론을 합니다.

- 1차에 나왔던 내용을 바탕으로 토의 내용을 분류합니다.

< 1차 토론회 내용 분류 >

학생이 지켜야 할 수업규칙 (동의 한 사람 수)	선생님이 지켜야 할 수업규칙 (동의 한 사람 수)
1. 욕하지 않기 (4) 2. 핸드폰 하지 않기 (2) 3. 떠들지 않기 (10) 4. 질서 잘 지키기 5. 조용히 하기 6. 뛰지 않기 7. 잠자지 않기 (4)	1. 학생을 무시하지 말자 2. 모범을 보이자 3. 학생에게 욕설하지 않기 (3) 4. 때리지 않기, 체벌금지 (4) 5. 수업 시간에 핸드폰 사용하지 않기 (3) 6. 불필요한 신체접촉하지 않기 7. 쉬는 시간에 수업 하지 않기

8. 수업에 늦지 않기 (2) 9. 선생님에게 공손(말대답하지 않기) (3) 10. 준비물 챙겨오기 (3)	8. 글씨를 크게 써주기 9. 수업 시간에 문제 맞추면 사탕주기 10. 아이들이 지루해 보이면 수업에 도움이 되는 영상(동영상)을 보여주세요.
학생이 지켜야 할 생활규칙 (동의 한 사람 수)	선생님이 지켜야 할 생활규칙 (동의 한 사람 수)
1. 실내화, 실외화 구별해 신기(6) 2. 싸우지 않기 (3) 3. 자기 주변 정리 잘하기 4. 껌을 뱉지 말기 (3) 5.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5) 6. 복도를 뛰어다니거나 몰러다니지 말기 (8) 7. 물건을 훔치지 말자 2 6. 무단외출을 하지말자 7. 심한 장난이나 산만하게 놀지 않기 (3) 8. 교실 문 잘 닫기 9. 다른 사람 책상 건들지 않기 10. 때리지 않기(폭력금지)(3)	1. 학생 인사 받아주기(3) 2. 종례는 칼같이 3. 수업 시간에 지루하지 않게 하기 4. 복도에서 호루라기 불지 말기 5. 무리한 청소시키지 않기(2) 6. 교실에서 실외화 신지 않기(2) 7. 실내에서 너무 크게 소리 나는 하이힐 안 신기 8. 수업 시간에 빨리 들어오기 9. 수업 중 치면 수업 끝내기 10. 흡연하지 않으시기

<규칙 정하기 2차 토론회 예시>

새 싹 모듬	삭제되어야 할 것 (인권조례에 어긋나는 것 또는 애매하거나 확인 불가능 한 것)	있으면 좋는데 강제로 하면 더 효과가 없는 것 (자율규정)	강제로 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큰 피해를 입는 것 (타율규정)
교사	- 수업 시간에 문제 맞추면 사탕 주기(수업시간마다 다르므로) - 아이들이 지루해보이면 수업에 도움이 되는 영상(동영상)을 보여주세요(수업시간마다 다르므로) - 복도에서 호루라기 불지 말기 (위험한 순간이 있으므로)	- 학생을 무시하지 말자 - 모범을 보이자 수업 시간에 지루하지 않게 하기 - 글씨를 크게 써주기 - 무리한 청소시키지 않기 (2)	- 학생에게 욕설하지 않기 (3) - 때리지 않기, 체벌금지 (4) - 수업 시간에 핸드폰 사용하지 않기 (3) - 불필요한 신체접촉하지 않기 - 쉬는 시간에 수업 하지 않기
학생	- 선생님에게 공손(말대답하지 않기) (자기 의견을 공손하게 말할 수도 있으므로)	- 심한 장난이나 산만하게 놀지 않기 - 자기 주변 정리 잘하기. 껌을 뱉지 말기 -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5) - 복도를 뛰어다니거나 몰러 다니지 말기 (8) - 잠자지 않기 (4)	- 욕하지 않기 (4) - 핸드폰 하지 않기 (2) - 떠들지 않기 (10) - 물건을 훔치지 말자 - 무단 외출을 하지 말자

셋, '우리 학교 생활협약 만들기' 전교생 총투표를 합니다.

- 학급회의 토론회와 대의원회의를 통해서 압축된 15개 내외의 생활협약 가운데 학생들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8개(또는 10개)를 확정하는 투표임.
- 전교 학생회장단이 총투표 관리 위원회 위원이 되어 공정하고도 엄숙하게 투표가 진행되도록 해야 함. 학급회장과 교내 방송을 통해서 투표의 의의를 명확히 공지해야.
- 투표 용지는 A4용지로 만들되, 1~15번까지 예비 생활협약을 나열하고 선호하는 조항에 기표할 수

있도록(선관위의 기표 도장) 오른쪽에는 공란을 만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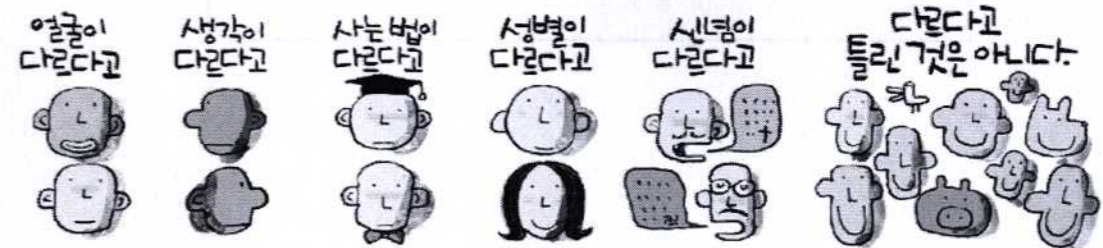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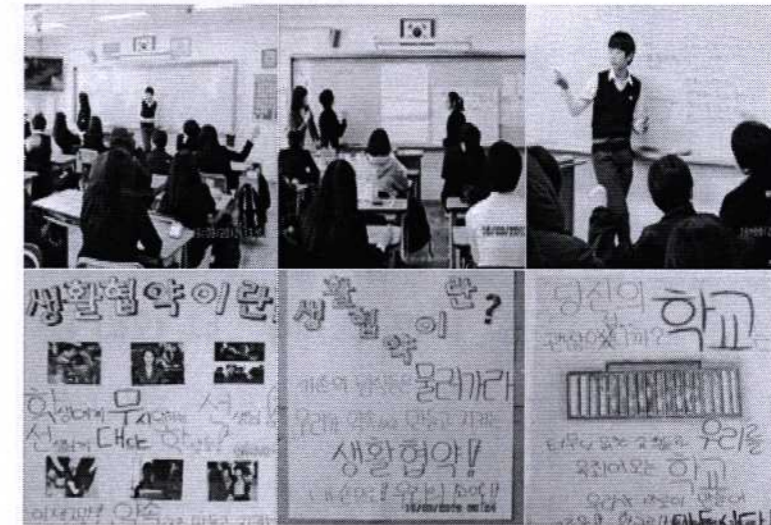
- 투표장은 학교 강당에 설치하거나, 강당이 없는 학교는 학생들이 접근하기 좋은 교실 1개 또는 3개 정도를 투표장으로 개조하여 사용함.
- 학생회장은 사전에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여 적정 수의 기표소와 기표도장, 투표함 대여 신청을 하여, 투표 당일에 투표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총투표 진행 상황은 학교 방송을 통해서 비디오로 촬영해 전체 학급에 생중계 할 수 있음. 총투표 진행 상황은 사진과 비디오로 기록하여 홍보나 교육에 활용함.
- 총투표는 1~2교시 또는 5~6교시에 하고, 투표가 종료된 날 방과후에 학생회장단과 학급회장단들이 함께 모여서 개표를 함.

넷,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 총투표 개표 결과는 이튿날 신속하게 공표하여 전교생들이 투표 결과를 숙지하고 자신들이 함께 만든 규칙을 충분히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결과 공표 방법은 1차로 학급회장들에게 결과를 공지하여 학급별로 공고되도록 하고, 2차로 학교내의 오프라인 게시판과 학교방송, 홈페이지 등으로 공고함.

교사와 학생 서로가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사봉 중 공동체 협약만들기>



4

나와 너, 우리의 권리



■ 나와 너, 우리의 권리

- 1. 나는 소중한
- 2. 차이와 차별
- 3. 세계의 약속 '유엔아동권리협약'
- 4. 퀴즈로 알아보는 인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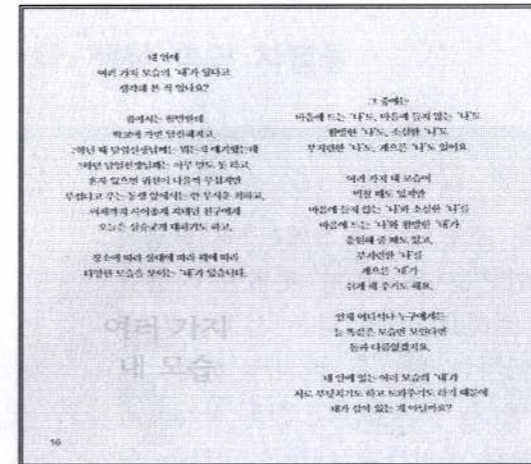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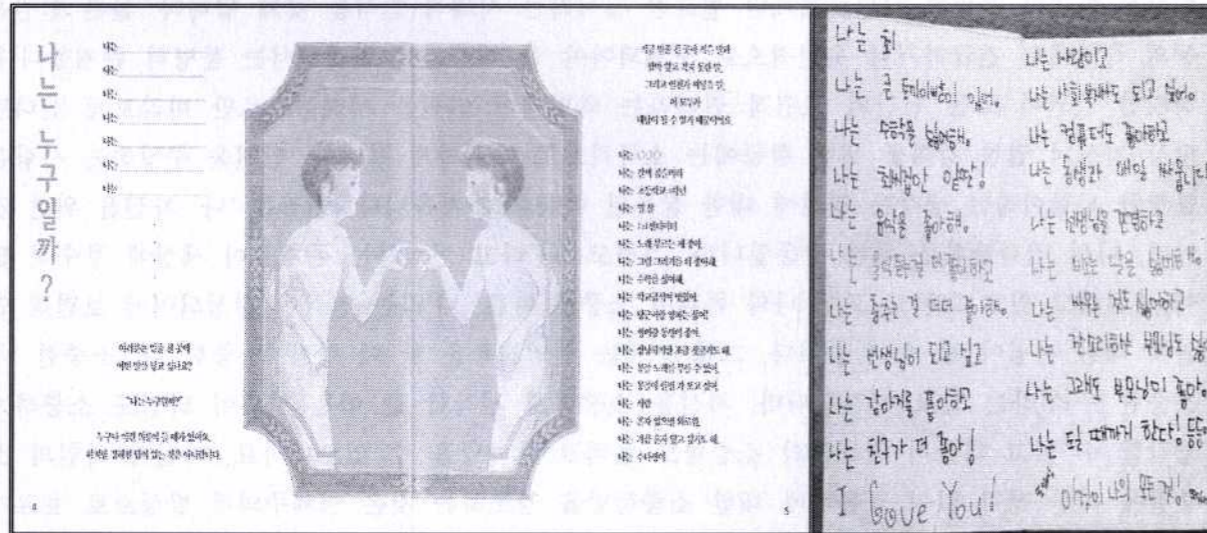
1 나는 소중한

인권을 이야기하며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은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권의 시작은 사람에게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로는 이해하려 해도 마음속으로 사람에게 미움과 공포, 혐오가 가득하다면 정말 인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인권은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 대한 경외와 사랑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권에 대한 생각은 인지적인 깨달음이라기보다 신념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물론 배움을 통해서도 신념이 형성되긴 하지만 신념이라는 인간 의식체계는 훨씬 복잡한 과정이 담겨있습니다. 때문에 인권은 마치 도덕처럼 그것에 대한 당위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개인적 경험과 확신이 더해질 때 더 강력한 신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흔히 어린이들에게 인권을 이야기 할 때 제 3세계 어린이들의 기아 혹은 참담한 아동 노동의 실상 등을 이야기하며 인권의 소중함을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인권을 배운 어린이들은 인권이 불쌍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라는 시혜적 인식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인권운동의 측면에서 긴급하거나 우선적으로 구제되어야 할 대상들이 현실에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인권이 모든 인간의 보편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인권을 시혜적으로만 바라보게 한다면 막상 자신의 권한 강화를 위한 활동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됩니다.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인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져옵니다. 인권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며, 나의 권한강화를 위한 활동입니다. 그리고 '나'라고 인식하는 존재들이 세상에 무수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 그들도 모두 나와 똑같이 소중한 다른 '나'라는 인식이 형성되어야 보편적 인권에 대한 신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권교육을 할 때 항상 '소중한 나, 소중한 너, 소중한 우리'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타인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고 더불어 공동체의 소중함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자신과 타인의 소중함에 대한 생각 없이 공동체에 대한 소중함만을 강조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때문에 곰돌이 선생님과 함께 하는 인권교육은 늘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가. 나는 누구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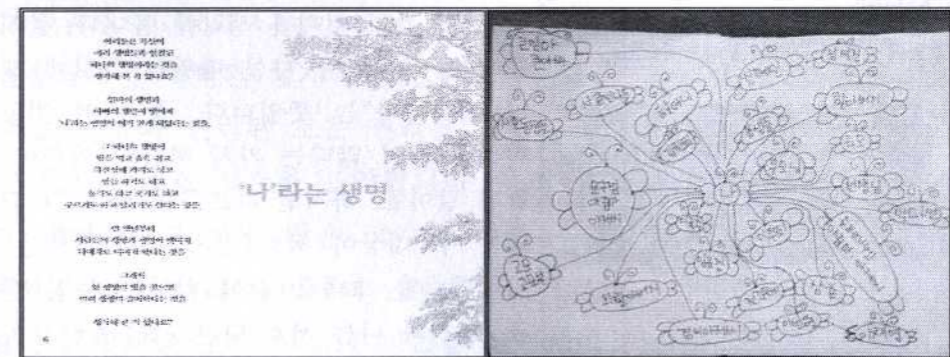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를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말들을 찾아보고 그 말들이 나타내는 다양한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와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다른 사람들도 바라봅니다. 세상에는 서로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살고 있지요. 우리는 나를 구성하는 다양한 모습을 조금 어려운 말로 '정체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정체성 중에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싫거나 편견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나에게서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누군가가 나의 한 가지만을 가지고 나를 판단한다면 나는 몹시 슬플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가진 무지개빛 모습을 모두 봐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혹시 나는 다른 사람의 무지개를 보지 못하고 한 가지 색깔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한 가지 반찬만 먹는 걸 편식이라고 하듯이 한 가지 시선으로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편견'이라고 하지요. 편식이 우리의 몸이 튼튼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듯이 편견도 우리의 마음이 튼튼하게 자라는데 도움이 주지 않는답니다.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어울려 살려면 편견을 버리고 그들의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지요.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좋은 모습이건 싫은 모습이건 내 안에 있는 다양한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내 속에는 게으른 나도 있고 부지런한 나도 있지요. 마음에 드는 나와 마음에 들지 않는 나도 모두 나의 한 부분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긍정해 줄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를 사랑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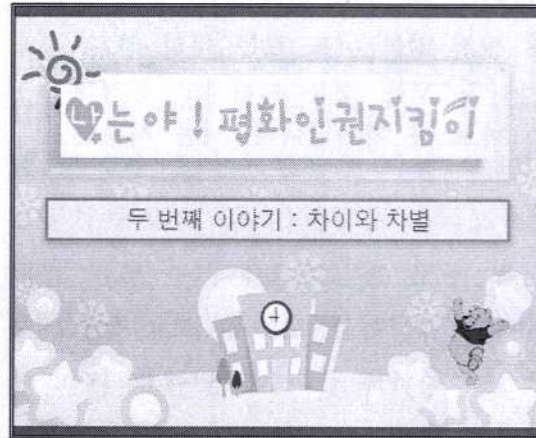
나.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나라는 생명은 어디서 왔을까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생명의 나무, 관계의 지도를 그려봅시다. 관계의 지도를 그리다 보면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예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의 그물, 관계의 그물 속에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들로 인해 때로 기쁘기도 하고 때로 슬프기도 하지요. 나로 인해 그들도 때로 실망스럽기도 하겠지만 때로 행복함을 느끼기도 하겠지요. 그렇게 사람들은 서로 관계 맺으며 살아갑니다.

2 차이와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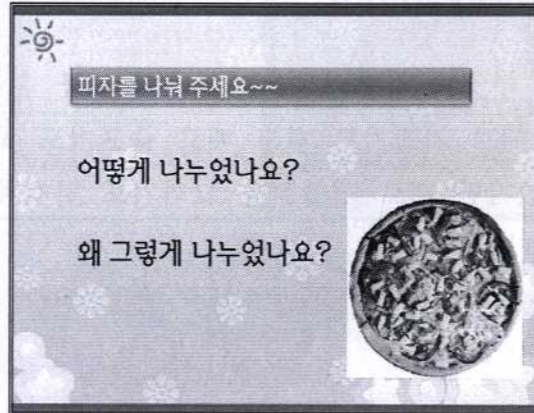
사람은 모두 소중한데 세상에는 왜 전쟁이 일어나고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걸까요. 나와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늘 오해와 편견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들의 무지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없답니다. 그래서 평화와 인권 두 번째 이야기는 차이와 차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차별은 왜 생겨나며 차이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가. '틀리다'와 '다르다'



답이 없는 문제를 통해 '틀리다'와 '다르다'는 말이 가진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틀리다는 말은 "셈이나 사실 따위가 그르거나 어긋나다"는 뜻입니다. 즉 어떤 기준에 비추어 옳지 않다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포함된 말이죠. 하지만 다르다는 말은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같이 않다는 뜻일 뿐이죠. 당신과 나는 서로 다른가요, 틀린가요.

차별은 웬지 나쁜 것 같은데 나는 혹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차별에 대한 생각들을 끄집어내 봅시다. 주어진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나는 정말 모든 사람을 차별없이 대할 수 있을까요? 난파된 섬에서의 피자 나누기를 통해 차별과 평등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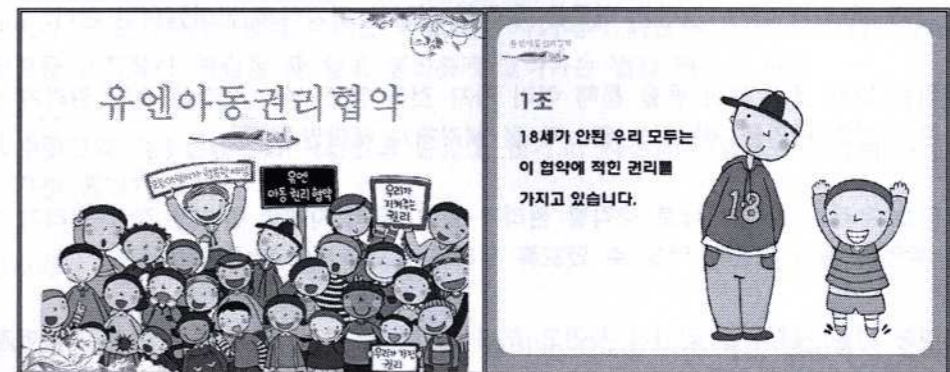
나. 생활 속의 차별들



왜 항상 출석번호를 매길 때 남학생은 앞번호부터 여학생은 뒷번호부터 일까요? 번호 매기기 속에 숨어있는 차별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또 경찰이 되는 시험을 보는데 0.2cm 차이로 시험 볼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공평한 기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길을 걷다 발에 채이는 돌멩이라도 그것 없이 커다란 집을 지을 수 없듯이 세상에 보잘 것 없는 사람이란 없답니다.

3 세계의 약속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적인 인권조약입니다.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아동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생각한 조약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193개국의 비준을 받음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은 국제법입니다. 현재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과 소말리아 뿐입니다.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나라의 정부는 협약에 명시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전체 54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 가운데 주요 조항만을 뽑아 쉬운 말로 옮겨 보았습니다.

제1조 : 18세가 되지 않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이 조약에 적혀있는 모든 권리의 주인이다.

제2조 :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이든지, 그리고 백인이건 흑인이건 간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인지 아닌지, 부유하건 가난하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이 조약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3조 : 어른이 우리에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어른은 최선의 것을 주어야 한다.

제6조 : 모든 사람은 우리들 청소년 모두가 생명을 누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7조 : 우리는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이름, 부모님의 이름, 태어난 날이 기록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국민이 될 권리가 있다. 날 낳아준 부모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권리와 부모님에게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부모님과 헤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경우란 예를 들어 부모님이 우리를 해치거나 보살피 주지 않을 때이다. 또한 부모님이 서로 따로 살기로 한다면 우리는 어느 한 분과 함께 살아야 하지만 두 분 모두를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0조 : 우리가 부모님과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 우리는 부모님에게 돌아가 같은 나라에서 살 권리가 있다.

제11조 : 우리는 유괴당하지 않아야 하고, 만일 유괴당한다면 정부는 우리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제12조 : 어른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릴 때 우리에게 우리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어른은 우리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제13조 : 우리는 말과 글과 예술 등을 통해 여러 가지 것을 알고 우리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지 잘 생각해서 해야만 한다.

제14조 :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할 권리가 있고, 우리 자신의 종교를 정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어야 한다.

제15조 :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사귀고 모임을 만들 권리가 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위한 모임은 안된다.

제16조 : 우리는 사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17조 : 우리는 라디오, 신문, 텔레비전, 책 등을 통해 세계 곳곳의 정보를 모을 권리가 있다. 어른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제18조 :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기르는 노력을 두 분이 함께 해야 하고,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해주어야 한다.

제19조 : 아무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해쳐서는 안된다. 어른들은 우리가 매맞거나 무관심 속에 내버려지게끔 놔두지 말고 우리를 보호해줘야 한다.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우리들을 해칠 권리가 없다.

제20조 : 부모님이 안 계실 경우, 또는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1조 : 우리가 입양되어야 할 경우, 어른들은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해야 한다.

제22조 : 우리가 망명자인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3조 :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장애인인 경우, 다른 아이들처럼 자라날 수 있도록 특별한 보살핌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4조 : 우리는 건강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아플 때 전문적인 치료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어른들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아프지 않도록 먹고 보살피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7조 : 우리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 등을 주어야 하고 만일 부모님이 어렵고 힘든 경우에는 나라에서 부모님을 도와주어야 한다.

제28조 : 우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무료여야 한다.

제29조 :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은 우리가 가진 사람됨, 재능,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맘껏 개발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유로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이해하고, 깨끗한 환경을 생각하며, 책임질 줄 알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제30조 : 소수집단의 청소년에게도 자신만의 문화를 즐기고, 자신들의 종교를 믿으며,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31조 : 우리에게 쉬고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2조 :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 때는 건강에 안 좋거나 학교에 가지 못할 상황에서 일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우리가 일을 해서 누군가 돈을 번다면 우리는 우리가 일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 우리는 법을 어기는 마약을 만들고 파는 일을 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제34조 : 우리는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아무도 우리 몸에 우리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없다. 곧 누군가가 함부로 우리 몸을 만지거나 사진을 찍거나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하게 할 수는 없다.

제35조 : 아무도 우리를 유괴하거나 팔 수 없다.

제37조 : 우리도 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심한 창피를 주거나 상처를 주는 벌을 내릴 수는 없다. 최후의 방법인 경우를 빼고는 우리를 감옥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된다. 만일 감옥에 들어갔을 경우 우리는 감옥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와 정기적으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8조 : 우리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15살까지는 절대로 군대에 들어가거나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제39조 : 전쟁이나 홍수, 지진 때문에 우리가 다치거나 보살핌을 받지 못할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40조 :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을 경우, 우리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경찰과 변호사와 법관은 우리를 존중하여야 하고 모든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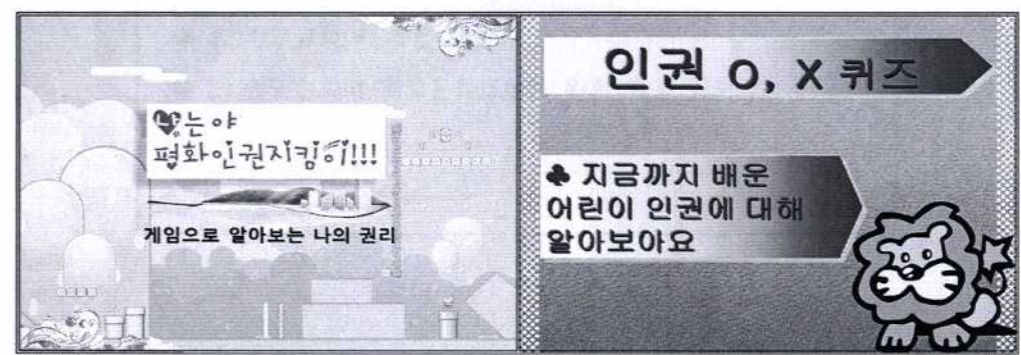
제42조 : 모든 어른과 청소년은 이 조약에 대해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에 대해 배울 권리가 있고 어른들도 역시 이 권리들에 대해 배워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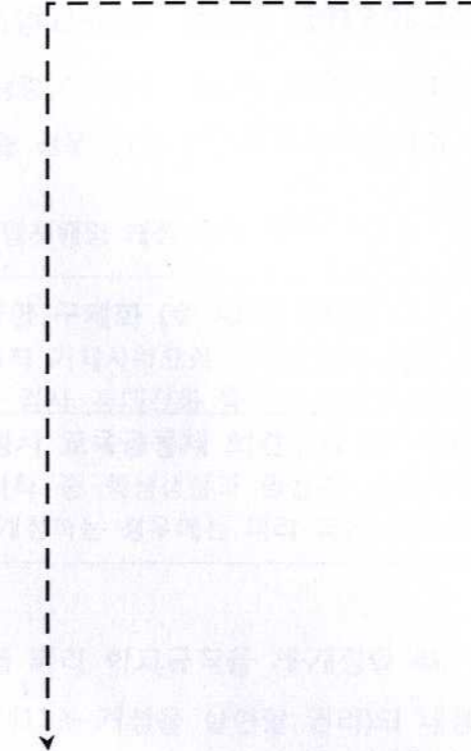
4 퀴즈로 알아보는 인권

유엔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내용을 4가지 범주로 나누어보고 짧은 동영상 시청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어린이 인권이 어느 정도 보호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지금까지 배운 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퀴즈로 풀어봅시다.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이유로 좋지 않게 대하는 걸 뭐라고 하나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적힌 아동의 권리는 몇 살까지 해당되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지 않고 한 가지 모습만을 바라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도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앞으로도 서울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멋진 참여단 어린이가 되기 위해 함께 실천해 보아요. 끝.





학교규칙 제개정 방향

- 1. 학교규칙 제개정 방향
- 2.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학교 규칙



1 학교규칙 제·개정 방향

관련 근거 : 책임교육과 -12585 (2012.05.24)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공포(2012.04.20)됨에 따라, 학교에서는 동시행령에 따라 학교 규칙을 제·개정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주요 사항

- 학칙 기재사항 구체화 (令 제9조제1항)
 - (개정사항) 학칙 기재사항으로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
- 학칙 제·개정시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令 제9조제4항)
 - (개정사항) 학칙 중 학생생활과 밀접한 사항(시행령 제9조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 관련)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나. 동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때, 학생의 두발에 대해서는 서울학생인권조례(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의 내용과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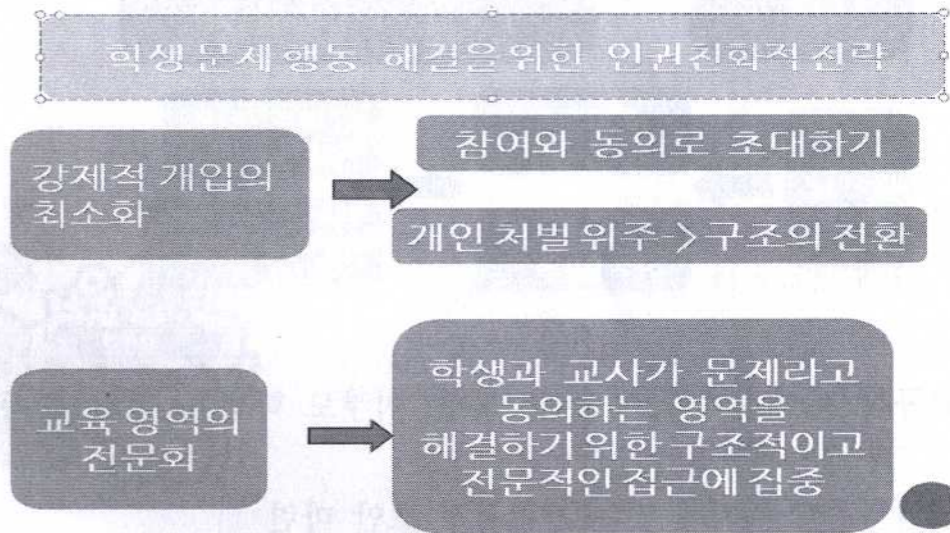
다. 기타 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도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개정하여야 함.

서울학생인권조례 주요 내용

서울학생인권조례	비고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 두발은 학생의 개성 실현 권리로써 규제하지 않음 ○ 복장은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에 위해를 주거나 타인의 인권 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학생이 참여하는 학칙을 정하여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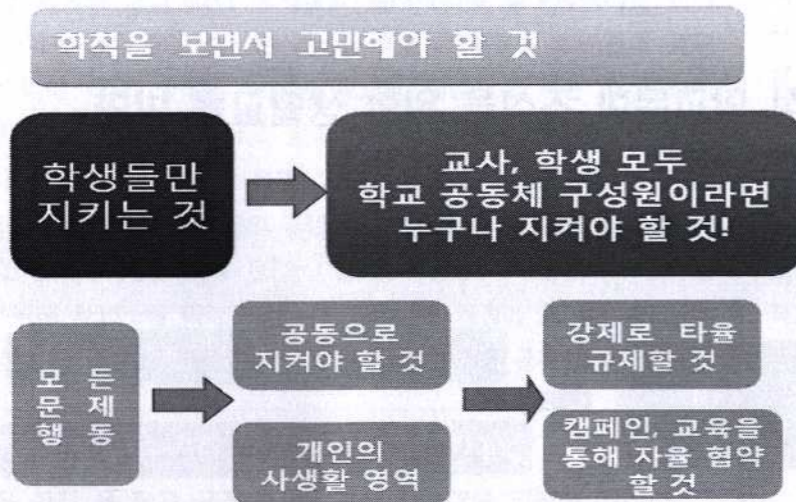
<p>제13조(사생활의 자유)</p> <p>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 또는 검사의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19조에 따라 학생이 그 제정 및 개정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p>	<p>o전체 교사 등의 상황을 제외한 휴대폰 소지, 또는 사용자체를 금지하는 일괄 압수 금지</p> <p>o수업 방해, 타인의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규제 사항을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규칙으로 정함</p>
<p>제19조(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p> <p>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생 또는 학생자치조직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의견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학교규칙 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p> <p>④ 학교규칙소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학생자치조직의 요구가 있거나 학교규정의 제·개정안에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내 공청회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p> <p>⑤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규정 제·개정에 대한 심의절차에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p>	<p>학교장이나 학교 운영위원회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와 결정 내용을 존중</p>

1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생활교육 방향



- 학생인권조례를 준수하는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 인권친화적 생활지도를 통한 존중, 참여 의식 확대
 - 강제 규율 최소화와 교육의 전문화
 - 강제로 규정하기 애매한 것, 주관적해석이 가능한 것은 자율규정화
 - 명백하게 본인과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강제 규정 (흡연, 도난, 폭력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교육역량 강화)
 - 인권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해 비인권적 생활지도 방식 개선
 - 자율적으로 규제할 부분에 대한 참여의 폭 확대
- 학생생활규칙에서 학생의 권리와 책임의 균형
 - 학생생활규정에 책임뿐 아니라 권리도 명시

2 학교규칙 제·개정시 고려 사항



- 학교규칙 제·개정에 앞서 교사, 학생, 학부모 학생인권조례 숙지 필요
- 학생인권조례 취지에 맞는 생활규정 초안 마련
(두발 강제지도 금지, 휴대폰 일괄압수 금지, 용의복장·핸드폰 학생의견 반영하여 규칙마련)
- 학생생활규정에 권리와 책임의 균형 (동반 명시)
- 학급단위 학생들의 토론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확보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이나 관련교과 시간 활용)
- 학교 규칙 제·개정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하며,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함
- 학생들의 의무만 담은 교칙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할 공동체 생활 협약 지향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권교육센터

인권교육 문의
인권침해 상담

02-3999-082, 086
02-3999-081, 083~085

1권역	동부, 성동, 강동	081
2권역	서부, 강서	083
3권역	남부, 강남, 동작	084
4권역	중부, 북부, 성북	085



서울특별시교육청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 학생생활규칙에 관하여
- 학교생활기록부
-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장
- 교감
- 교장